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 번 번호	1562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의자 : 김장겸 · 서천호 · 엄태영

강승규 · 김은혜 · 구자근

이달희 · 조경태 · 조승환

최수진 · 박정훈 · 박정하

김소희 · 안철수 의원

(14₁^o)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대리인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p><u><신설></u></p> <p>③ · ④ (생략)</p>	<p>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현행과 같음) <p><u>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u> <u>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u> <p><u>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u></p>